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소:우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4층/전화:02)3271-0427 /fax:02)718-1781 / 담당자:최동우

문서번호 : 세가본 제130호(총무-103)	선			지	
시행일자 : 천일국 7년 천력 3월4일 (양 2019.4.8)	결			시	
수 신 : 전국 지구장 및 교구·교회장	접	일자		결	
경 유 :	수	시간		재	
참 조 :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 믿음의 부모관련 행정 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후 세계본부 기준 횡적사명 완료를 위한 3단계 조건을 충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와 관련된 전반의 행정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국 교회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믿음의 부모에 대한 규정

- 1) 입교원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결심케 한 사람
- 2) 스스로 입교한 경우 당시 교회의 목회자
- 3) 축복자녀의 경우 실체의 부모

2. 믿음의 부모 변경을 위한 행정

현재 교회관리시스템에 믿음의 부모의 기재가 상당수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규정에 맞지 않은 믿음의 부모로 변경된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 잡고자 하며, 믿음의 부모는 위 규정에 따라 한번 결정되면 변경할 수 없으며, 교회의 이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아래의 항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1) 『믿음의 부모』의 믿음의 부모를 세운다.

2) 위 1)의 해당자가 없거나 거부할 경우, 입교 당시교회의 목회자의 계열(교회장, 교구장, 지구장, 협회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믿음의 부모를 세울 수 있다. 단, **현재 소속 교회 목회자로의 변경은 금지한다.**

3) 이 외의 경우는 본인과 전 믿음의 부모, 새 믿음의 부모가 합의하여 소속 교회장과 함께 믿음의 부모 정정신청서에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구, 지구를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함.

4) 믿음의 부모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또는 2012년 이전 입교자의 경우는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가 함께 믿음의 자녀 소속 교회장에게 충분히 소명한 후 믿음의 부모 정정신청서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함.

5) 외국 식구는 국내에서 신규로 전도한 경우 외에 한국 식구를 믿음의 부모로 세울 수 없으며, 단 외국식구 및 외국식구의 믿음의 부모가 신한국가정연합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 믿음의 부모와 함께 소속 교회장에게 충분히 소명한 후 믿음의 부모 정정신청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함.

6) 현재 시스템상에서 믿음의 부모를 정정하여 승인 받았다고 하여도 본부에서 보관중인 입회원서의 DB가 구축되면, 입회원서 원본의 믿음의 부모로 수정 될 수도 있음.

7)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건을 결제한 공직자가 책임을 지게 됨.

3. 행정사항

1) 믿음의 부모 변경은 입회원서가 본부 승인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입회원서 본부승인 전에는 변경신청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시스템 구조상 단 1회만 변경이 가능하오니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중죽메시아 선포가정의의 1대 믿음의 자녀와 2대의 믿음의 자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4) 승인

가. 2012년 이전 입교 식구는 교구승인 후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나. 2012년 이후 ‘행정지원센터 하나로’ 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본부 승인 후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5) 문의 : 총무국 최동우 과장(☎ 02-3271-0427)

첨 부 : 1. 믿음의 부모 정정신청서. 1부 끝

회 장 이 기 성

